서울장학재단 공고 제2022-13호

# 2022년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장학생 선발공고

서울장학재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여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고취하고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2년 4월 22일
**(재)서울장학재단 이사장**

## 1 선발 개요

**1. 사 업 명:**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2. 지원대상:**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이하(4대 ~ 6대) 후손인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 또는 서울 시민(의 자녀)으로서 비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

**3. 선발인원:** 총 100명

**4. 장 학 금:** 연간 3,000,000원 (150만원*2회 분할 지급)

**5. 지원성격:** 학업장려금
※ 2022년 서울장학재단 학업장려금 간 중복수혜 불가(국가장학금, 교내외 장학금은 중복수혜 가능)

**6. 선발절차**

| 신청서 접수<br>[온라인/등기우편] | 1차 심사<br>[적격심사] | 2차 심사<br>[서류심사] | 3차 심사<br>[최종심의] | 최종 합격자<br>발표 |
|---|---|---|---|---|
| 4.29(금) 10:00<br>~ 5.11(수) 17:00 | 재단<br>내부심사 | ①정량평가<br>②정성평가 | 장학생<br>선정위원회 | 6월 중 |

※ 선발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2 장학금 신청

## 1. 신청자격 (아래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의 증손자녀 이하(4대 ~ 6대) 후손[1)]

나. 아래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서울 소재 대학 정규학기 재학 학부생

② 서울 시민 또는 서울 시민의 자녀로서 비서울 소재 대학 정규학기 재학 학부생

**신청자격 상세설명**

**1.**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전몰군경 등)는 선발 비대상**

**2.** 소속 대학의 **'서울 소재' 여부는 [붙임2]의 자료(지원 대상 대학 명단)** 참조
***원격대학은 비서울 소재 대학으로 분류함**

**3. 정규학기 재학 중인 학부생만 신청 가능**
*신청 비대상: 정규학기 마지막 학기 재학생, 휴학생, 초과학기 재학생 등
*신청 당시 정규학기(마지막 학기 제외) 재학중이나 2학기 휴학 예정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
*초과학기: '본전공'의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학기

**(예시) 수업연한이 4년(8학기)인 경우**

- 이미 이수한 학기가 6학기이고, 당해학기가 7학기인 경우
  : 당해학기 = 정규학기(7학기), 다음학기 = 정규학기(8학기)
- 이미 이수한 학기가 7학기이고, 당해학기가 8학기인 경우
  : 당해학기 = 정규학기(8학기), 다음학기 = 초과학기(9학기)
- 이미 이수한 학기가 8학기이고, 당해학기가 9학기인 경우
  : 당해학기 = 초과학기(9학기), 다음학기 = 초과학기(10학기)

## 2. 신청방법

가. 공 고 일: 2022. 4. 22.(금)

나. 신청기간: **2022. 4. 29.(금) 10:00 ~ 5. 11.(수) 17:00** (온라인 신청 기준)

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후 서류 등기우편 제출**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등기우편은 신청 마감일(5.11) 소인분까지 인정**

라. 제 출 처: **(0413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2층(공덕동)**
서울장학재단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담당자 앞

마. 우편접수 확인방법: 재단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장학금 신청목록
(접수중 → **접수완료-심사중** 변경)

---

1) 4대 후손: 증손자녀, 5대 후손: 현손자녀, 6대 후손: 내손자녀

## 3. 제출서류 (등기우편 제출 필수)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제출서류</th><th>발급처</th></tr>
<tr><td colspan="2" rowspan="3">①~③<br>공통서류</td><td>① 온라인 신청서(신청내역)<br>*출력 방법은 p.7 [참고자료]의 Q1 참조</td><td rowspan="2">재단 홈페이지<br>지정서식 다운로드<br>www.hissf.or.kr</td></tr>
<tr><td>② 신청자 체크리스트</td></tr>
<tr><td>③ 재학증명서</td><td>소속 대학</td></tr>
<tr><td colspan="2">④~⑤<br>유족 확인서류</td><td>④ 독립유공자 유족확인원<br>⑤ 가족관계증명서<br>*유족 확인서류는 p.7~8 [참고자료]의 Q2, Q4 필수 참조<br>*후손 인정 범위: 증손자녀 이하(4대 ~ 6대 후손)</td><td>주민센터 방문<br>또는<br>정부24 홈페이지<br>www.gov.kr</td></tr>
<tr><td colspan="2" rowspan="2">⑥~⑦<br>자기소개서,<br>성적증명서</td><td>⑥ 자기소개서</td><td>재단 홈페이지<br>지정서식 다운로드<br>www.hissf.or.kr</td></tr>
<tr><td>⑦ 성적증명서<br>*1학년 제출 생략(2학년 이상 제출 필수)</td><td>소속 대학</td></tr>
<tr><td rowspan="5">⑧<br>경제상황<br>증빙서류<br>(택1)</td><td>Ⓐ<br>기초생활<br>수급자</td><td>· 수급자 증명서</td><td rowspan="2">주민센터 방문 또는<br>정부24 홈페이지<br>www.gov.kr</td></tr>
<tr><td rowspan="3">Ⓑ<br>법정<br>차상위계층</td><td>· 한부모가족 증명서</td></tr>
<tr><td>· 차상위계층 확인서<br>· 자활근로자 확인서<br>·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br>ㄴ 비대상: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초과 부가급여에 체크된 자</td><td>주민센터 방문 또는<br>복지로 홈페이지<br>www.bokjiro.go.kr</td></tr>
<tr><td>·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br>ㄴ 비대상: 공고일(4.22) 전 자격 상실, 신청 종료일(5.11) 후 자격 취득</td><td>국민건강보험공단<br>www.nhis.or.kr</td></tr>
<tr><td>Ⓒ<br>학자금<br>지원구간<br>통지서</td><td>· 2022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br>ㄴ '성명, 생년월일, 신청학기,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일자'가 확인되어야 함(개인 조회용 또는 열람용 화면 캡쳐본은 미인정)</td><td>한국장학재단<br>www.kosaf.go.kr</td></tr>
<tr><td colspan="3">※경제상황 증빙서류 미제출 가능(단, 미제출시 소득 점수 최하점 부여)</td></tr>
<tr><td colspan="2">⑨~⑩<br>추가서류<br>(해당자만 제출)</td><td>⑨ 제적등본<br>· 직계가족 증명서 발급 불가로 방계가족 증명서 제출시<br>· 가족관계증명서로 후손 확인이 어려운 경우<br>⑩ 주민등록등본(비서울 소재 대학 지원자)</td><td>주민센터 방문 또는<br>정부24 홈페이지<br>www.gov.kr</td></tr>
<tr><td colspan="4">※ 서류 발급 인정기간: 2022. 4. 22(금)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br>※ 경제상황 증빙서류(⑧), 주민등록등본(⑩)은 가족 명의로 발급된 서류도 인정<br>- 가족 인정 범위: 미혼 – 부모 / 기혼 – 배우자<br>- 가족 인정 범위 외 명의자(형제, 조부모 등)의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td></tr>
</table>

**4.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장학금 신청 마감일(5.11(수) 17시)까지 **온라인 신청서를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나. **온라인 신청과 우편접수를 모두 완료해야 최종 심사 대상자로 확정**됩니다.

다. 심사 중 필요시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신청서에 본인 확인을 위한 정보를 부정확하게 작성하거나 서류 구비를 잘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마. 신청기간 이후 접수(방문접수 포함) 불가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및 제출한 서류 등이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 장학생 선정은 취소되며, 장학금을 받으신 경우에는 해당 장학금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 3 선발심사 및 결과발표

**1. 심사기준 및 방법**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세부 내용</th><th>비고</th></tr>
<tr><td>1단계</td><td>적격심사</td><td>• 지원요건 적정성 검토<br>- 온라인 신청 및 등기우편 서류 접수 완료자 심사<br>-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제출 서류 적정성 검토<br>- 가구당 선발 및 지원 인원은 1인으로 제한<br>- 재혼가정 등의 경우 친양자 입양된 자녀만 인정<br>- 필요시 서류 보완사항에 대해 심사 기간 중 별도 안내하며, 기간 내 미보완시 부적격 처리함</td><td>등기우편 서류<br>미제출자<br>심사 제외</td></tr>
<tr><td>2단계</td><td>정량심사</td><td>• 서류심사 대상자 선발(선발 정원의 1.2배수)<br>- 정량평가를 통해 선발 정원(100명)의 1.2배수(120명)를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발<br>- 학년별 아래 기준에 따라 분리 심사 및 선발
<table>
<tr><th>구분</th><th>선발 인원</th><th>선발기준</th></tr>
<tr><td>1학년</td><td>30명</td><td>소득기준(소득낮은순 선발)<br>수급자·차상위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순<br>*동순위자 발생 시 서류심사 대상자로 동시 선발</td></tr>
<tr><td>2학년 이상</td><td>90명</td><td>소득(100점) 및 성적(100점)<br>점수 총합 고득점자 순<br>*동순위자 발생 시'동점자 심사기준'적용</td></tr>
</table>
*1학년은 대학 성적 미보유로 동등한 기준으로의 심사가 어려움에 따라, 소득 기준만으로 선발 인원의 25%를 분리하여 심사·선발함.</td><td>동점자 심사기준<br>(2학년 이상)<br>① 소득(낮은순)<br>② 성적(높은순)<br>③ 위 기준으로 동순위 시 동시 선발함</td></tr>
</table>

| | | | |
|---|---|---|---|
| **3단계** | **서류심사** | • **자기소개서 정성평가**<br>- 외부위원 자기소개서 정성평가 고득점자순 선발<br>- 심사항목: 학업 및 자기성장의지(50점), 공익에 대한 소명의식(40점), 장학생 활동의지(10점) | **동점자 심사기준**<br>① 소득(낮은순)<br>② 성적(높은순)<br>③ 선정위원회 |
| **4단계** | **장학생 선정위원회** | • 최종 선발을 위한 종합 심의 | 결과발표: 6월 중 |
| **심사 결격 기준** | **학사기준** | ◦ 정규학기 마지막 학기생, 초과 학기 재학생, 휴학생 등<br>◦ 지원 비대상 대학 재학생, 대학원생 등 | |
| | **서류 미비 등** | ◦ 등기우편 미접수자, 제출서류 미비자, 접수 기간 외 제출<br>◦ 재단에서 요청하지 않은 서류, 미인정 서류, 허위 서류 제출<br>◦ 제출서류 발급일 미준수<br>◦ 비공식 서류(개인 조회용 또는 열람용 등), 식별 불가능한 서류 제출 등 | |

※지원자 현황 및 심사 운영 상황에 따라 선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적격 지원인원이 서류심사 대상인원(1.2배수) 미달시 정량심사 없이 서류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

**2. 최종 결과 발표:** 6월 중 예정

## 4 장학금 지원기준

**1. 지원기간**: 선정연도(2022년) 내 지원(2개 학기)

**2. 장학금 지급**

가. 지급일정: 6월, 11월 예정(차년도 이월 불가)
나. 지급방법: 학생 계좌 지급
다. 지원성격: 학업장려금(등록금성 장학금 및 재단 외부 장학금과 중복수혜 허용)
※지급중단 사유 발생 시 장학금 지급 중단 혹은 환수 할 수 있음

**3. 장학금 지원 중단 및 반납**

가. 22년 1, 2학기 대학교 미소속자(제적, 자퇴, 퇴학, 졸업 등)
나. 장학생 활동에 무단으로 불참 또는 불성실하게 참여하거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 기타 허위 사실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해 장학생으로 선정 또는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이 경우 지급 중단과 함께 기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음)

# 5 장학생 활동

**1. 장학생 오리엔테이션 (필수)**

가. 진행시기: 6월 중 (합격자 대상 별도 공지)

나. 진행방법: 실시간 온라인 진행 예정

다. 진행내용: 장학생 오리엔테이션(장학증서 수여, 장학금 지급 및 장학생 활동 안내 등)

**2. 독립운동 콘텐츠 제작 (필수)**

가. 진행시기: 7월~11월

나. 활동방법: 개인 또는 조별 독립운동 관련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배포(제출)

다. 주제선정: 독립운동가 선조와 관련된 독립운동 활동 또는 독립운동가로서의 업적 등

라. 기타사항: 활동 방법 및 세부 안내사항은 오리엔테이션에서 공지 예정

**3. 장학생 성장보고 (필수)**

가. 진행시기: 9월~10월

나. 진행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 제출

다. 제출내용: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생으로서의 사회 기여 및 공익적 활동 실천 성과, 학업 및 진로 활동 내용과 성과 등

**4. 만족도 설문조사**

가. 진행시기: 12월

나. 진행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 제출

다. 조사내용: 장학사업 운영 및 장학금 지원 전반 만족도, 개선요구 의견 등

**신청문의**

💻 홈페이지 Q&A 게시판: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www.hissf.or.kr) > 소통공간 > Q&A > 묻고답하기

☏ 유선문의: 02-725-2257, 070-8667-3511 (문의시간: 평일 9:00~12:00, 13:00~18:00)

붙임 1. 2022년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신청서(양식) 1부.

2. 지원 대상 대학 명단 1부. 끝.

# [참고자료] 자주하는 질문

**Q1) 장학금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

**A1)** 장학금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1단계: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후 신청 내역 출력**
  **[장학금 안내]** > **[대학생 장학금]** >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 **[장학금 신청]** 클릭, 온라인 접수 후 접수번호와 인적사항이 기재된 해당페이지를 **인쇄**하여 준비


신청 정보*

접수번호 독립유공자2020-1-

개인정보*

| 성명 | | 생년월일 | |
|---|---|---|---|
| 휴대전화 | | 연락처(비상연락망) | |

<…중략>

☑ 소득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정보 제공하여 장학생 선발, 심사, 장학금 지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장학금 신청기간에 한하여 마이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내용 수정, 삭제가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 신청서 작성 기재 오류, 서류미비, 장학금 대리 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인쇄 닫기

- **2단계: 서류 구비**(**공고문 p.3**에 기재된 서류)
- **3단계: 신청서류 일체 등기우편 발송**
  ※등기우편은 신청 마감일(5.11) 소인분까지 인정

**Q2) 독립유공자 후손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2)** **<독립유공자 유족 확인원>** 서류에 제시된 독립유공자의 유족과 학생 본인이 직계가족임을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구분 | 증명서류(제출서류) |
|---|---|
| **4대 후손 (증손자녀)** | • 독립유공자 유족 확인원(**부모님** 성명 표기)<br>•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또는 부모님 기준 발급본 1부) |
| **5대 후손 (현손자녀)** | • 독립유공자 유족 확인원(**조부모님** 성명 표기)<br>• 가족관계증명서(부모님 기준 발급본 1부) |
| **6대 후손 (내손자녀)** | • 독립유공자 유족 확인원(**증조부모님** 성명 표기)<br>• 가족관계증명서(조부모님 기준, 부모님 기준 발급본 각 1부(총 2부) 필요) |

**Q3)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는 해당 안되나요?**

**A3)**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은 '독립유공자(**애국지사, 순국선열**)'의 후손분들이 장학금 신청대상입니다. 참전유공자 등 다른 국가유공자는 장학금 선발 대상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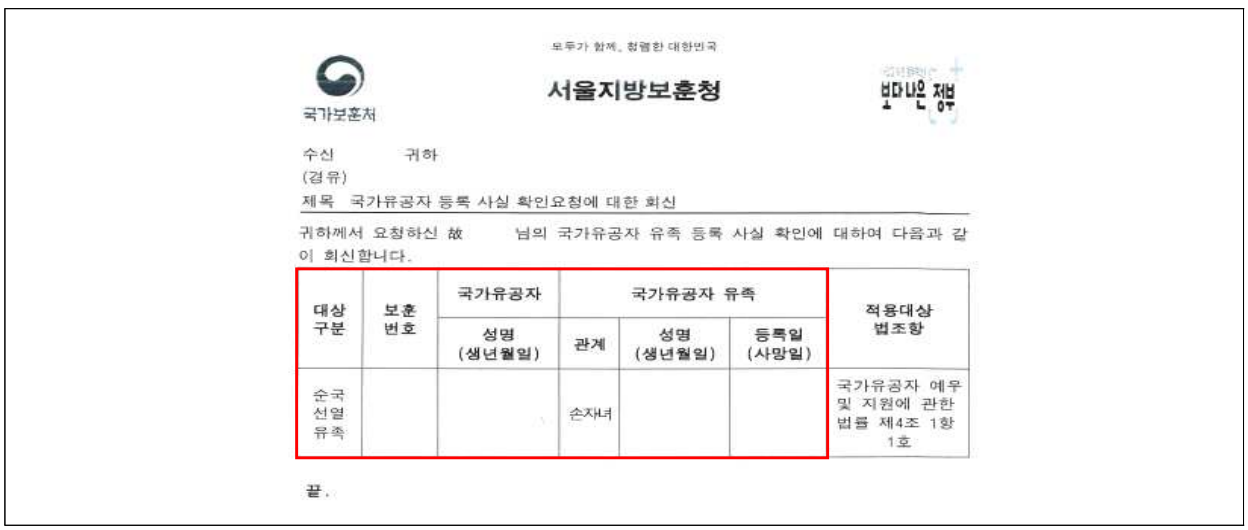
**Q4) 독립유공자 유족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A4)** 직계가족의 독립유공자 유족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없는 특수한 상황(직계 가족의 사망, 행방불명, 국외이주 등)에 있는 경우 대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대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 |
|---|---|
| **대체 인정** | ① 독립유공자 유족(**손자녀**)임이 확인 가능한 **국가보훈처 공문**<br>② 독립유공자 유족(**손자녀**) 명의의 **보훈급여금 지급확인원**<br>③ 독립유공자 유족(**손자녀**)임을 확인하는 **국민신문고 답변서**<br>**※ 3대 후손(손자녀)에 대한 증빙서류에 한하여 인정함** |
| **대체 불인정** | ① 신청인이 증손자녀 이하 후손임이 명시된 국가보훈처 공문<br>(반드시 손자녀 인정 공문+가족관계증명으로 증빙 필요)<br>② 독립유공자 유족증 및 훈장증 등<br>③ 제적등본과 증빙자료 상 생년월일, 이름 일치 여부가 확인 불가한 경우<br>④ 기타 증빙자료(훈장, 사진, 기록 등) |

**Q5) 독립유공자 유족임을 확인하는 공문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A5)** 지방보훈지청(서울지방보훈청 등)에 **독립유공자/유족 등록확인 공문** 발급을 요청하시면 되며, 공문 발급 시 **대상구분(애국지사, 순국선열), 보훈번호, 유공자/유족 성명, 생년월일,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등록일자**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청

보다은 정부

수신 귀하

(경유)

제목 국가유공자 등록 사실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귀하께서 요청하신 故 님의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사실 확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대상 구분 | 보훈 번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유족 | | | 적용대상 법조항 |
|---|---|---|---|---|---|---|
| | | 성명 (생년월일) | 관계 | 성명 (생년월일) | 등록일 (사망일) | |
| 순국 선열 유족 | | | 손자녀 | |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1호 |

끝.

**Q6) 제적등본은 필수로 제출해야 하나요?**

**A6)** 2008년 이전 사망자 또는 직계가족의 행방불명,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직계가족의 독립유공자 유족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없어 **방계혈족의 서류로 증명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선택서류**입니다.

주민센터에서 **관계증명을 위한 제적등본** 발급을 요청하시고 독립유공자 유족확인원으로 확인 가능한 **방계혈족과 신청자 본인**에 해당하는 **이름 위에 형광펜 등으로 표시**해달라고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Q7) 선순위 유족도 아니고 외가 후손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7)**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은 선순위유족 여부, 외손여부 등과 관계없이 독립유공자의 4대 ~ 6대 후손이시고, 관계를 증명하실 수 있으시다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장학금 지원은 학생 본인의 부모(1가구) 기준 1인만 가능합니다.

**Q8) 경제상황 증빙서류가 없어도 지원 가능한가요?**

**A8)** **경제상황 증빙서류가 없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단, 경제상황 증빙서류가 없으면 우선순위가 없거나 기본점수가 부여되므로 다른 지원자에 비해 선발에 불리합니다.
**경제상황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하시는 것이 선발에 유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9) 국가장학금 또는 외부의 다른 장학금과 중복지원 가능한가요?**

**A9)**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은 재단 외부 장학과 중복수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당해 연도 서울장학재단의 학업장려금 간 중복수혜는 불가합니다.

**Q10) 성적증명서에 백분위 점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A10)** 대학의 성적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성적증명서에 **백분위 점수, 담당자 성함,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서명을 수기로 기재** 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Q11) 편입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A11)** 기편입자로서 현재 대학의 정규학기 성적이 있는 경우, 현재 소속 대학의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주세요. 신편입자로서 현재 대학의 정규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 소속 대학의 재학증명서, 전적 대학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